|  |  |
| --- | --- |
| **사회통합원회에 종교평화선언 질의서 발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http://www.bpolicy.com/paper/images/view/icon_newslink.gif http://www.bpolicy.com/news/200 발행일: 2011/11/11  **불교와 정책**

|  |
| --- |
| <btn news>는 지난 11월 8일 도법 스님이 제118차 중앙종회에 출석해서 범종교 평화선언에 대해서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불교계의 선언 발표를 계기로 공동의 종교평화선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통력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의 주선으로 이 작업이 시작됐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범종교 차원의 평화 선언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 매체의 보도에 의하면 범 종교 평화 선언을 대통령 직속기구인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가 주도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는 자칫 헌법에 보장 된 종교의 자유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어 ‘불교사회정책연구소’(운영자 법응)는 11월 10일 다음 내용과 같이 사회통화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발송 했다.  다음은 질의 공문 내용의 전문이다.  제목 : **사회통합위원회의 ‘범종교 평화선언’ 추진의 위헌성에 대한 질의**   사회통합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한국사회에서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ㅇ btn(불교tv)11월 8일자 인터넷 판 뉴스에 의하면 조계종 결사추진 본부장 도법 스님이 제 118차 조계종중앙종회에 출석하여, 범 종교 평화선언에 대한 발언에서 “불교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이 불교계의 선언 발표를 계기로 공동의 종교평화선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의 주선으로 이 작업이 시작됐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범종교 차원의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ㅇ 사회통합위원회는 사회통합위원회규정(대통령령)제2조(설치 및 기능)제 ②항에 의하여 1.사회통합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과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3.계층 등 경제적 지위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4.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5.지역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6.세대, 성(性), 인종, 다문화 간의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7.시민사회와 공공부문, 중앙과 지방간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사회통합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일을 합니다.  ㅇ btn(불교tv)보도와 같이 도법 스님의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의 주선으로 이 작업이 시작됐으며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 범종교 차원의 평화선언이 나올 것”**이라 한바 이 보도가 사실이라 한다면 이는 헌법 제第20條 (①모든 國民은 宗敎의 自由를 가진다. ②國敎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宗敎와 政治는 分離된다.)와 ‘사회통합위원회의 규정’에도 위반이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해 주십시오.   **질의 사항**  1.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조계종에 종교평화선언을 주선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기화로 조계종이 ‘종교평화 불교인 선언(21세기 아쇼카 선언)’을 했다면 이는 정부가 종교계에 직접 지시 및 간섭한 것으로써 헌법 제20조의 위반이며, 사회통합위원회가 의무 없는 행위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대통령 직속기구를 통한, 정치인인 대통령이 종교에 간섭한 것이라는 결론적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2. 사회통합위원회의 규정의 설치와 기능 9개 항 중 ‘종교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나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제4호에 ‘이념 등 가치 문제에 따른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이 있는바 종교를 ‘이념 또는 가치’와 동등하게 인정한 것인지? 이념분과위원회의 기조는 ‘모든 갈등의 기본인 이념과 가치의 갈등완화를 추진합니다.’ 라며 ‘진보와 보수와 함께 공정사회를 주 사업으로 설정’한바 역시 종교간 문제를 다루기에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단어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라는 단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법위반이기에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사회통합위원회가 종교간 평화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것은 사회통합위원회의 규정 위반 및 월권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그 동안의 여러 사례와 보도에 의하면, 한국사회에서의 종교간 갈등은 대부분 기독교계의 열성 신자들과 그들이 추종하는 일부 목회자 및 단체에 의해 발생하고 있음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btn(불교tv)보도를 살펴 보건데, 사회통합위원회가 불교계에 선 주문해서 종교평화선언을 하면 여타 종교계가 선언을 할 것이라 한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합위원회가 종교간 갈등의 사실상 피해자인 불교계를 마치 가해자 내지는 같은 입장이라는 인식을 사회에 주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4. 사회통합위원회가 종교간 갈등 해소의 대안을 찾는다면 △국가정책에 따른 종교간 갈등 원인 △대통령 통치(인사정책 등)스타일의 문제 △특정종교의 배타성 및 공격성 문제 등에 관한 객관적인 내부 연구와 자료의 공개가 필요합니다. 이명박정부 이후 한국사회에서 종교간 갈등의 원인은 사실상 대통령의 ‘국가경영' 또는 '공공경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부정키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사회통합위원회는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솔직한 지적과 대안을 보고해야지, 불교계 등을 이용해서 종교평화선언과 그 이후의 일을 추진한다면 사회통합위원회의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5. 종교의 신념은 여타의 사회 이념이나 주의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것은 절대신념의 영역입니다. 만약 사회통합위원회의 목적과 기대대로 범종교적 차원의 평화 선언문이 실제로 도출이 된다면 민감하기 짝이 없는 그 내용을 과연 모든 종교계가 쉽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초미의 관심입니다. 표면적으로 교단의 공식적인 입장은 ‘수용’과 ‘찬성’이겠으나 대다수의 종교인과 하위 신자 층에서 반발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면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이 개인적으로는 불교인이요, 이 작업이 실질적으로 정부조직인 사통위와 불교계의 협력으로부터 시작된바 그것은 이전보다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점화될 여지를 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인한 문제의 발생 시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6. 범종교 평화선언문이 위와 같은 문제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민감한 부분을 최소화 하고 단순히 각 종교의 평화 공존의 의지와 협력의 약속, 즉 이제까지 종교간 대화와 모임에서 늘 그래왔던 것처럼 대의명분 정도만을 정리해 발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종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하며 실질적인 효과도 그다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범종교 평화선언은 결국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현 이명박정부의 가시적 치적 쌓기에 불교계와 종교가 이용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책임의 소재는 또한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6개항을 질의 합니다. 각 항에 성실한 답변을 조속히 요구합니다.  첨부 : 1. btn(불교tv)11월 8일자 인터넷 판 뉴스              2. 사회통합위원회규정(대통령령) 끝. |

 |  |

http://www.bpolicy.com/news/200